



제 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돈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02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제정안 관련 제21대국회 논의 경과	6
IV. 검토의견	7
1. 법 제정 배경과 체계	7
2. 법률 제정 필요성	11
3. 주요 항목별 검토	18
가. 한돈의 정의	18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등 수립	26
라. 실태조사 및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30
마.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33
바. 한돈산업 관련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40
사. 한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의무화	43
아. 수입안정보험 실시 근거 마련	46
자. 후계·청년 한돈인 등에 대한 특별지원	53
차.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57
카. 한돈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60
타. 과잉생산 예측 시 한돈 생산 또는 출하 조정	64
파. 시장격리 및 비축사업 추진	67
하. 도축·출하장려금 지급	70
거.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74
너. 한돈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80
더. 한돈 소비촉진 지원	82
러. 한돈 해외시장 개척 지원	8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17.
3. 회 부 일 :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돼지 생산액은 2023년도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위를 차지(쌀 8조 572억원)하며, 주 단백질공급원인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이 2013년 20.9kg(쌀 67.2kg)이 2023년 30.1kg(쌀 56.4kg)으로 44%나 증가(쌀 16.1% 감소)하는 등 이미 국민의 주요 주식이 되었고,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의 통제를 가장 먼저 받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위기시에 이를 통제·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전

무함.

현행 한돈 산업을 진흥·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한 실정임.

더불어,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IT 등의 신기술 개발 등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및 후계·청년 한돈인 육성, 국제협력의 촉진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한돈산업발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며,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한돈의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하며, 산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생산비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교육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돈농가 스스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한돈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사 관련 시설 설치비,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두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과잉 또는 과소생산이 예측되어 한돈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시 한돈을 시장격리 및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 또는 출하 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돈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자.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에 따라 급격한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며,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돈의 품질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축장 현대화 및 도축·가공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비선택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 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는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개선 경영실천, 탄소중립 실천 등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외홍보, 수출 전문인력양성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Ⅲ. 제정안 관련 제21대국회 논의 경과

□ 제정안과 관련된 제21대국회 발의 제정안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문표의원안, '23. 5.)
및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안, '23. 11.)이 발의되었음.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24. 5. 29)

IV. 검토의견

1. 법 제정 배경과 체계

최근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CPTPP 협정¹⁾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 전쟁 등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 발생,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 및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한돈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한돈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효율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한돈의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돈농가가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1)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명칭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며,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임.

【 제정안 구성 체계 】

여기구의원안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돈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8조(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제9조(연구·기술개발)
제10조(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제3장 한돈산업 경영안정 및 수급관리 등>
제11조(수입안정보험)
제12조(후계 및 청년 한돈인 육성·지원)
제13조(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제14조(한돈수급조절협의회)
제15조(한돈 수급조절 등)
제16조(시장격리 및 비축사업 등)
제17조(도축·출하 장려금)
제18조(한돈 부산물의 활용)
제19조(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
제20조(사료작물 재배 지원)
<제4장 한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등>
제21조(한돈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제22조(도축·가공시설 지원 등)
제23조(한돈 소비촉진 지원)
제24조(축산환경 개선 실천 및 지원 등)
제25조(가축질병예방 실천 및 지원 등)
제26조(국제협력의 촉진 및 지원 등)
<제5장 보칙>
제27조(청문)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정안은 총 5장, 29개 조의 조문,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한돈,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 등을 정의하고 있고, 한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2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돈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3장은 농식품부장관이 한돈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후계·청년 한돈인에게 생활·가축사육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돈농가에 대하여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돈 생산자단체 요청 시 한돈의 생산·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4장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한돈 품질개선 및 유통구조개선, 도축·가공시설 및 소비촉진 지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 대하여는 ESG 개선 경영, 탄소중립, 가축질병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제5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자체장, 공공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후로 규정하고 있음.

2. 법률 제정 필요성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 분야 별도법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닭, 오리, 메추리, 면양, 염소, 사슴, 토끼 등) 관련 단체들도 별도법 제정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존 축산업 발전의 제도적 근거인 「축산법」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돈을 포함한 모든 축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²⁾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품목에서 별도법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주요 농축산물과 비교 시 생산방식과 산물의 유통 및 가격 결정 체계가 특수하고, 낮은 생산·소비 저변으로 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특이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입장임³⁾

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유사내용의 축종별 지원법 난립 시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 우려, 축산법 및 축산자조금법 등 기존 법령과 유사·중복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고려 시 한돈 농가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2)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24.7.18., 조경태 의원)이 현재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3) 「낙농진흥법」(‘67년 제정), 「곤충산업법」(‘10년 제정), 「말산업법」(‘11년 제정), 「차산업법」(‘15년 제정), 「양봉산업법」(‘19년 제정), 「화훼산업법」(‘19년 제정) 등

나. 검토 의견

현재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지난 30년간 2.5배 증가하여 '24년 기준 1인당 30kg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돈 농가의 전업·규모화가 지속되어 농장수는 '05년 12,300호에서 '25년 5,600호로 감소하였음.

한편, 도축량은 돈가 상승 추세에 따라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월·매년의 등락폭이 큰 상황임.⁴⁾

- 돼지고기 소비량 : (1990) 60만톤(자급률 85%) → (2024) 158만톤(자급률 71.4%)
- 농장수(통계청) : ('05) 12.3천호, ('10) 7.3 → ('18) 6.2 → ('22) 5.7 ('25년 1분기) 5.6
- 전체/농장당 사육마릿수(12월 기준) : ('05) 8,961천두/729두, ('10) 9,881천두/1,345두 → ('18) 11,333/1,831 → ('20) 11,078/1,816 → ('22) 11,124/1,953 → ('24) 10,846/1,957
- 도축마릿수(연간 누계) : ('10) 14,589천마리 → ('15) 15,884 → ('18) 17,350 → ('20) 18,307 → ('22) 18,545 ('24) 19,0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3)

특히, 최근에는 한돈산업의 내·외부적 불확실성 요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먼저, 내부적으로는 국민 의식변화 및 소득 수준향상으로 소비과정에서의 탄소중립, 동물복지 등을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육방식 개선, 윤리적인 상품 소비 등 소비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분뇨처리·냄새 등 문제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규율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4) 도매가격(원/kg) : ('13) 3,375 → ('15) 4,585 → ('17) 4,640 → ('19) 3,779 → ('21) 4,722 → ('22) 5,227 → ('24) 5,239

다음, 외부적으로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철폐(미국, EU 등)에 따라 완전 개방상태에 가까워 향후 수입량이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국내산 한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⁵⁾ 발생 등으로 최근 수입이 주춤하였으나, 전염병 미발생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수입량이 확대될 여지가 높은 상황임.

【 주요국과의 FTA별 양허결과 】

(단위: %)

국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미국 (12.3.15)	16 ~ 20.2	8.3 ~ 18.0	0 ~ 15.7	0 ~ 13.5	0 ~ 11.2	0 ~ 9.0	0 ~ 6.7	0 ~ 4.5	0 ~ 2.2	0	0	0	0	0	0	0	0	0
칠레 (04.4.1)	4.2 ~ 4.8	2.1 ~ 2.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캐나다 (15.1.1)	22.5 ~ 25.0	22.5 ~ 25.0	22.5 ~ 25.0	20.0 ~ 23.0	15.0 ~ 21.1	10.0 ~ 19.2	5.0 ~ 17.3	0 ~ 15.3	0 ~ 13.4	0 ~ 11.5	0 ~ 9.6	0 ~ 7.7	0 ~ 5.7	0 ~ 3.8	0 ~ 1.9	0	0	0
EU (11.7.1)	16.6 ~ 20.4	12.5 ~ 18.1	8.3 ~ 15.9	4.1 ~ 13.6	0 ~ 11.3	0 ~ 9.0	0 ~ 6.8	0 ~ 4.5	0 ~ 2.2	0	0	0	0	0	0	0	0	0

* 관세는 부위별, 냉장, 냉동 여부에 따라 각각 다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3)

【 돼지고기 공급량, 자급률, 도매가격 】

구분	공급량(천톤)			자급률(%)	돼지 도매가격 (원/kg)
	국내산(천톤)	수입산(천톤)	합계(천톤)		
`17	997.8	369.3	1,367.1	73.0	4,640
`18	1,026.5	463.5	1,490	68.9	4,296
`19	1,066.2	421.1	1,487.3	71.7	3,779
`20	1,097.0	310.5	1,407.5	77.9	4,185
`21	1,097.4	332.8	1,430.2	76.7	4,722
`22	1,107.4	442.4	1,549.8	71.5	5,227
`23	1,118.2	402.9	1,521.1	73.5	5,134
`24	1,131.9	452.5	1,584.4	71.4	5,239
평년	1,100.6	385.6	1,479.5	74.0	4,68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3)

5)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임.

이에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돈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후계·청년한돈인 등에 대한 특별지원 및 긴급경영안정 사업 지원 등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돈 수급조절을 위해 시장격리 및 비축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 전쟁 등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 발생,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 및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한돈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바,⁶⁾ 이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다만,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02.06.)

첫째, 현행 「축산법」에서 축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한돈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축산법」에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물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경우, 현행 「축산법」등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임.

반면, 현행 법령체계로는 제정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한한돈협회 등의 찬성의견도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미 ‘양봉·말·곤충·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봉·말·곤충·양잠 등’과 같이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⁷⁾함.

7)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하여 생산·유통·판매 등이 특수하고 생산·소비 저변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개별법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임.

둘째,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돈산업만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한돈농가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축산 분야 가운데 한돈산업에 대해서만 특별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며, 다른 축종 분야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반면, 돼지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국내 육류 소비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품목⁸⁾으로서, 이를 생산·유통하는 한돈산업은 국민건강·식량안보에 기여도가 높은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돈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한편, “한우”의 경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5. 4. 29.)에서 의결되어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5. 6. 23.)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바, 한돈이 축산물 생산액이 한우의 2배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한우 뿐만 아니라, 한돈의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한돈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성,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중복 여부,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24년 기준 돼지고기 30kg(49.9%), 소고기 14.9kg(24.8%), 닭고기 15.2kg(25.3%)

【 '23년 기준 축산물 생산액】

구 분	생산액(단위 : 10억원)	비중(단위 : %)
한돈	9,112.7	49.2
한우	4,428.7	23.9
닭	2,713.1	14.7
오리	1,714.0	9.3
육우	270.4	1.5
염소	187.7	1.0
젖소	66.9	0.4
사슴	15.0	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3)

3. 주요 항목별 검토

가. 한돈의 정의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각종 육성·지원의 대상인 “한돈”, “한돈농가”, “한돈산업”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돼지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말한다. 2. “한돈농가”란 제1호의 한돈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돈산업”이란 한돈의 생산·사육·가공·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수출 등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한돈산업관계자”란 제3호에 따른 한돈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한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한돈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축산법」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토종돼지가 있는 상황에서 한돈을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돼지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검토의견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한우”와 달리 “한돈”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를 의미하는바, 국내 생산 돼지의 품종 비율('24년 종돈(모돈)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99%)이 요크셔, 랜드레이스 등 외래종임.

【 '24년도 종돈장 현황조사 결과((사)한국종축개량협회) 】

■ 품종별 모돈 사육현황('24년)

(단위 : 두, %)

구분		모돈[종돈(암)] 규모							합계
		L	Y	D	B	H	K	기타	
'24년	사육 마릿수	9,029	56,985	1,630	920	26	54	21,729	90,373
	비율	10.0	63.1	1.8	1.0	0.03	0.1	24.0	100

* L : 랜드레이스, Y : 요크셔, D : 두록, B : 버크셔, H : 햄프셔, K : 재래돼지, 기타: 기타외래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9)

“한우”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녀 토종가축 인정⁹⁾을 받은 품종은 국내에서 사육되는 종돈(모돈) 전체의 0.1%에 불과함.

9)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토종가축 인정현황('14~'23) 】

(단위: 가구, 마리)

축종	고시상 인정된 토종가축(A)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한 가축(토종가축)(B)			계(A+B)	
	인정농가수	사육규모	인정연도	등록농가수	사육규모	등록연도	농가수	사육규모
한우	4,480	6,131	'16~'23	125,545	6,883,259	'16~'23	130,025	6,889,390
토종돼지(재래돼지)	1	100	'19	4	2,066	'16~'23	5	2,166
토종닭	5	29,333	'15~'20	-	-	-	5	29,333
토종오리	1	8,000	'20	-	-	-	1	8,000
토종말(제주마)	-	-	-	630	3,928	'16~'23	630	3,928
토종벌(1군 2만마리 수준)	108	3,654군	'16~'23	-	-	-	108	3,654
계	4,595	43,564마리/ 3,654군	-	126,179	6,889,253	-	130,774	6,932,817마리/ 3,654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

【 토종가축 인정제도 인정기준 】

구분	내용	인정기준	비고
한우	일반한우	□ 품종별 부위별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충족 시	종축등록기관에서 등록한 경우 토종 가축으로 인정
	제주흑우	*모색, 체형, 뿔, 비경(코), 머리·목, 전구, 중구, 엉덩이, 넓적다리, 유기, 지제·발굽	
	참소		
토종돼지	재래종	□ 부위별 외모 특징* 등 충족 시, 단 실격조건**이 있는 경우 제외 *(재래종) 모색, 머리, 귀, 복부, 둔부, (개량재래종) 모색, 복부, 둔부 **모색 및 털색, 코, 귀, 유두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의 혈통 기록에서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개량재래종		
토종닭	재래종	□ 외모 심사 항목별*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체중, 균형 및 상태, 볏, 고기수염 모양, 부리·머리·눈·귀·뿔·목·날개·등·꼬리·몸통·가슴·다리와 발가락 모양 및 색깔	적갈색종, 황갈색종, 흑색종, 백색종, 회색종 등
	육량도착종		황색계, 흑색계, 백색계 등
	육질도착종		갈색계, 백색계, 황반계 등
토종오리		□ 외모 심사 항목별*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체중, 균형 및 상태, 부리·머리·눈·목·날개·등·꼬리·몸통·가슴·다리와 발가락 모양 및 색깔	
토종말		□ 외모기준*, 체형기준**을 충족 시, 단 실격조건***이 있는 경우 제외 *일반외모, 체형, 체격, 품위, 자질, 성징, 머리, 목, 전·중구, 어깨 등, 배, 허리, 후구, 엉덩이, 꼬리, 유기, 생식기, 지제, 보양 **체고, 배고, 고고, 흉위, 흉심, 흉폭, 요폭, 고폭, 체장, 두장, 전관위, 고장에 대한 체고 대비 비율 ***유전적 불량형질(등요병, 백내장, 앵무새입증, 천명증, 단고환, 잠복고환) 등	종축등록기관에서 등록한 경우 토종 가축으로 인정
토종별		□ 외모기준* 충족 시 *몸체 색, 뒷날개 시맥 모양, 허벅지, 체형, 머리방향	

※ 자료: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10)(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48호) 별표 1 발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

【 토종가축 인정제도 마크 】



10)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인정기관)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5. 토종별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② 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육되는 종돈(모돈)의 경우 대부분(99%)이 외래 품종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한돈”의 정의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돼지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한우”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한우”를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한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등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법 제정의 실익이 낮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검토의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련된 여러 가지 개별법 등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축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률을 다른 관련 법률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됨.

우선적 적용과 보충적 적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법률의 성격에 따르는데, 해당 법률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이고 사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으므로, 사항에 따라서 우선적 적용과 보충적 적용을 혼용할 수 있음.

따라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①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 ② 해당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③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됨.¹¹⁾

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② 해당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돈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현행 「축산법」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도 “축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로 규정되고 있는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중복되거나 상충될 경우 안 제3조에 따르면, 제정안이 아닌 「축산법」 등 현행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제정안이 “한돈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축산법」 등 관련 법률 보다 구체화·명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제정안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①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인 “한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법제기준과 실제(p258,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5.)

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등 수립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한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융자계획, 자금률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식량안보와 관련한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돈산업의 현황과 전망 2.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3.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 4. 한돈 자금률 확보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방안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한돈 농가의 부담 완화 방안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강하고 안전한 한돈 생산을 위한 품질 향상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종돈의 개량 및 보호 방안 8. 한돈의 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9. 한돈 가격 안정화 및 수급관리 방안 10. 한돈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 11. 한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기술 개발 지원 방안 12. 한돈의 위생관리 및 한돈 분뇨 처리 고도화에 대한 지원 방안 13. 한돈농가의 재산권 보장과 인근 주민의 삶의 질과의 균형을 위한 방안 14. 그 밖에 한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 정 안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축산법」에 따라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고, 전체 축산업의 틀에서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돈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축산법」 제3조는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돈산업은 축산물 수급조절, 사료, 축사시설 현대화, 환경개선, 가축방역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전체 축산업의 틀에서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3) 검토의견

현행 「축산법」 제3조¹²⁾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계획 수립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또한, 동법 제42조의13¹³⁾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등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임.

제정안은 현행 「축산법」상 축산업 발전 등을 위한 계획 수립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한 점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돈

12)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 「축산법」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군·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기본방향,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 한돈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라,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축산법」상 축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한 점과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돈산업의 발전만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다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축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라. 실태조사 및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한돈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 사육 두수, 생산량 및 소비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생산·사육·유통·소비 등에 관한 정보와 한돈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등의 정보를 통합 활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검토의견

현재 한돈농가는 탄소중립, 동물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사육방식 개선과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해외 수입량 변동폭 확대에 따라 내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현재 축산 관련 국내외 관련 정보는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식약처, 관세청, 농협 시스템에 분산 관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보 관리에 애로가 있는 실정임.

【 축산 관련 정보 관리 현황 】

담당 기관	내 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내 가축동향조사(가축사육마릿수 및 축산농가 현황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축산물 이력 정보)
식약처	수입식품 정보마루(수입 축산물 검사실적 등), 식품안전나라(축산가공품 생산실적 등)
관세청	수출입무역 통계(축산물 수출입 실적)
농협	축산정보센터(축산농가 지원 관련 정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9)

따라서,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매년 한돈 산업 현황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한돈의 생산·사육·유통·소비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한돈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돈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마.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한돈산업 발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①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한돈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한돈의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한돈산업 인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품질향상 및 사료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한돈의 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사)대한한돈협회가 추천하는 자 3. 한돈 관련 학계 전문가 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한돈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 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6. 소비자 단체 대표 7. 한우농가 대표 8. 한돈 관련 수출·입 업체 대표 9. 한돈 유통관련 전문가 10. 그 밖에 한돈산업발전을 위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위원회 구성보다는 「축산법」 제4조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 한돈산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행정안전부

동 법률안의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관련 위원회인 ‘축산발전심의위원회(농식품부 소속 자문위원회)’와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제정안은 한돈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 한돈업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한돈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축산법」 제4조¹⁵⁾는 동법 제3조¹⁶⁾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동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축산발전시책에 대하여 심의할 뿐, 그 밖의 축산업의 현안 및 발전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심의하고 있지 않음.

15)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6)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돈발전심의위원회 비교 】

구 분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근 거	축산법 제4조	제정안 제8조
소 속	농림축산식품부	
성 격	심의	
대 상	축산법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 심의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한돈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한돈의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한돈산업 인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품질향상 및 사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한돈의 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사)대한한돈협회가 추천하는 자 3. 한돈 관련 학계 전문가 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한돈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 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6. 소비자 단체 대표 7. 한우농가 대표 8. 한돈 관련 수출·입 업체 대표 9. 한돈 유통관련 전문가 10. 그 밖에 한돈산업발전을 위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

이에 제정안은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현행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한돈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돈산업의 현안 및 발전방안 등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체계적인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라, 동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한돈산업 관련 정책의 전문성 강화, 한돈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의견수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④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둘째, 위원회 구성원 선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씩은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
조17)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
도록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
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
하고 있는바,

「축산법」 제4조18)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
한돈산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임.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바. 한돈산업 관련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연구·개발하도록 하고, 연구·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을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연구·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은 한돈산업만이 아닌 축산 전 분야에서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법 제정이 아닌 현행 「축산법」 제도 하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3) 검토의견

고령화된 농촌 인력구조와 반복적·노동집약적 생산현장을 고려할 때, 스마트 축산 시스템¹⁹⁾, 사양관리 자동화²⁰⁾, 생체정보 센싱²¹⁾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연구개발 및 현장 보급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특히, 돼지의 경우 출하 기간이 짧고(비육 180일) 온·습도 등 환경에 민감하며 분뇨·악취에 따른 민원 야기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방역 등에 취약²²⁾한 축종이라는 특징을 가짐.

이와 같은 한돈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체별 생육 데이터에 기반한 ① 축사환경과 사양의 정밀 관리, ② 악취 및 방역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³⁾

제정안에 따라, 한돈농가에 ICT가 도입될 경우 축사 내부 온·습도, 개체별 생육과 사료 섭취량, 개체별 건강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가축 질병 조기경보, 축사 환경개선 등을 통한 양돈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9) (스마트 축산 시스템) ICT(정보통신기술), 센서, 자동화 장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축사 환경, 가축의 건강, 사양관리, 생산성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종합적인 축산 관리 체계, 단순 하드웨어 자동화를 넘어 가축의 생체 반응과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축사 및 가축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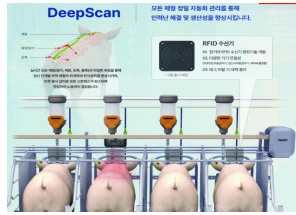
20) (사양관리 자동화) 가축의 사료 급여, 급수, 건강 관리, 번식, 축사 환기 및 온도 관리 등 축산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사양관리 업무를 자동화 장치와 소프트웨어, 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관리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음. (자동급여기, 자동포유기, 스마트 체중계, 환경 제어장치 등)

21) (생체정보 센싱)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의 움직임, 체온, 심박수, 반추 활동, 체중, 발정 등 생체 신호 및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하는 기술로 수집된 생체정보는 건강 이상 조기 탐지, 질병 예방, 발정 탐지, 정밀 사양관리 등에 활용되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22) 돼지는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두꺼운 지방층으로 인해 체내에서 발생하는 대사열을 체외로 방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여름 등 고온·다습에 매우 취약함

23) 돼지는 성장단계별로 적정 사육온도가 다르고 밀폐형 축사가 많으므로 온·습도 조절 등 온사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함(한우, 젖소 등은 개방형 축사에서 사육)

【 양돈관련 정보통신기술(ICT) 현황 】

			
RFID 수신기	포유모돈 자동급이기	포유모돈 자동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임신군사급이기	돼지 선별기	환경모니터링	미생물 조절장치
			
물살균소독기	물산소투입기	분뇨정화처리시설	자동급이기

개 별 시 설				공 통 시 설			
임신사	모돈군사급이기		모돈발정체크기	화재 및 질식사 감지기	사료빈관리기		사료빈관리기
분만사	포유모돈자동급이기			돈사 환경 관리기	돈방음수관리기		
자돈사	사료믹스자동급이기	컴퓨터엑상급이기	체중측정기	CCTV 카메라	냉,난방기	데이터 수집기	
육성사	사료믹스자동급이기	컴퓨터엑상급이기	체중측정기	양돈생산경영 관리프로그램 양돈시설제어 관리프로그램			
비육사	사료믹스자동급이기	컴퓨터엑상급이기	돈 선별기	이기종 통합 프로그램		종합분석	

▲ (그림 1) 사육단계별 ICT 장비

※ 자료: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제출(2025. 6. 18.)

사. 한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의무화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한돈의 생산비 절감·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교육, 가축질병 예방 및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전문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한돈의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2. 한돈의 가축질병 예방 및 위생에 대한 교육 3. 한돈의 탄소중립 등 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4. 한돈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5. 그밖에 한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를 위한 전문교육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양성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한돈농가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경우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의 수급 불안요인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가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²⁴⁾에 따라

24)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축산업 허가자는 이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축산법에 따른 교육과 동 제정안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할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돈자조금으로 한돈농가 등에 특성화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

【 2025년도 한돈자조금 교육 현황 】

한돈농가 교류사업					돼지FMD열병 방역교육	
한돈 농가	여성 한돈인	청년 한돈인	한돈인 대회	나눔행사	방역교육	도별
교육	교육	교육				위원회
287	17	26	8	5	14	5

※ 자료: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제출(2025. 6. 18.)

따라서, 동 제정안에 따른 교육에 대하여는 현행 「축산법」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방식·절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돈농가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경우 현행 「축산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 수입안정보험 실시 근거 마련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한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돈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돈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수입안정보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돈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돈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한돈 수입안정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 보험가입자의 기준, 보험료율의 산정, 보험모집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하는 선물가격이 없어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규모가 막대한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② 공정거래위원회

한돈 가격변동에 따른 한돈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려는 동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가 기준가격, 적정 생산량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훼손되어 과소·과잉생산이나 무임승차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대한한돈협회

돼지의 경우 생산에서 공급까지 장기간의 시차가 발생하고, 가격변동위험이 존재하는바, 일정 기준가격 이하로 한돈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험 원리에 따라 보상해주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제도는 농가의 경영불안을 줄여 자급률 유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제정안에 동의함.

3) 검토의견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1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가축’에 대하여는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손실만을 보장하는 ‘가축재해보험’만이 실시되고 있음.

【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비교 】

구분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목적	재해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를 보상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97~)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 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15~)
대상축종 (대상품목)	가축(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15개(본사업 9개, 시범사업 6개) *(본사업) 고구마, 가을감자, 콩, 양배추, 마늘, 양파, 포도, 보리, 옥수수 *(시범사업) 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지원내용	영업보험료(순보험료+운영비)의 50% (가입자별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자체에서 0~45%(가입자별 상한有) 지원 농가 보험료 부담은 5~50%(평균 38.9%)	보험료의 50% 수준*, 운영비의 100% 지원 *보장수준 80%일 때 50% 지원 보장수준이 낮아질수록 보조율은 높아지도록 설계
보장내용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손실 보장 *자기부담비율(소·말 20%, 가금·돼지 5%)을 제외하고 100% 보상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피해), 화재, 가격하락
소요예산	'25년 1,099억원	'25년 2,078억원
가입실적	'24년 기준 가입률 95.4%(가입두수 298,222천두) 수준 * ('01) 21.7% → ('19) 93.3 → ('20) 92.8 → ('21) 93.7 → ('22) 94.7 → ('23) 94.4 → ('24) 95.4	'24년 12월말 기준 9개 품목 2,649ha에 대해 3,297 농가가 가입, 가입률 3.9% 달성('23년 말 3.3% 대비 0.6%p 상승)
지급실적	'97~'24년까지 총 2조 1,278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	'24년 12월말 기준 가뭄, 폭염, 호우 등 피해에 대해 1,872 농가에 보험금 약 63억원 지급, 손해율 76.6%(누적 13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9)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외에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분’도 보장해주는 사업인 반면,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손실만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 및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한돈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한돈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의 기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미국에서 제정안의 수입안정보험과 유사하게 돼지에 대한 가축총수입보험(LGM-Swine)²⁵⁾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 돼지 가격은 생산자가 시장에서 수취하는 가격을 이용하지 않고, 시카고상

25) 돼지 시장가격이 하락하거나 사료비가 상승하여 실제총마진이 기대총마진에 못 미치면 양돈 생산자는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선물가격을 적용함.

따라서, 돼지가격에 대한 별도의 선물시장(先物市場)이 존재함에 따라 돼지가격의 상승 및 하락이 복잡다변한 변수들의 작용을 받게 되어 향후 돼지가격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축총수입보험(LGM-Swine)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돼지가격에 대한 별도의 선물시장(先物市場)이 존재하지 않는바, 한돈 수입안정보험 시행 시 기준 가격을 돼지의 평년가격으로 할 경우 돼지에 대한 시장의 생산량 예측이 비교적 수월한 이유로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보험의 역선택²⁶⁾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²⁷⁾

즉, 돼지의 경우 생육 특성상 임신기간이 약 4개월이고 새끼돼지가 출하되는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는바, 현재 돼지 사육마릿수 등으로 향후 6~10개월 간의 수급 상황이 예측 가능하고, 이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 하락 여부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여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²⁸⁾

또한, 돼지는 연간 생산규모가 모든 농산물 중 가장 크기 때문에(약

26)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함. 한돈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돼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많은 한돈농가가 예측하여 가입하는 상황

27) 돼지의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이 용이하다면, 하락으로 예측될 경우 모든 양돈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상승으로 예측될 경우 아무도 가입을 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손실이 막대하게 됨.

28) 과거 가격 변동 추이를 봤을때도 추석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다음해 상반기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10조 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보장보험과 달리 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원 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돈에 대한 수입안정보험을 원활히 실시하려면, 모든 한돈농가의 보험 의무가입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²⁹⁾ 이와 관련한 한돈농가 및 이해관계자별 간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제도 관련 해외사례는 다음과 같음.

29) 의무가입을 전제하지 않는 한 과거 미국 사례(선물가격이 없는 양 보험)의 경우 과거 손해를 평균이 488%이며, 이에 따라, '20년 이후 상품 판매를 중단함.

【 축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제도 관련 해외사례 】

□ 미국 가축 수입보장보험

※ 현재 미국 외 가축 수입보장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

- 미국 정부는 가축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2000년 농업위험보호법(ARPA,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두 가지 형태의 가축보험*을 시행하고 있음

* 가축총수익보험(LGM, Livestock Gross Margin), 가축위험보호(LRP, Livestock Risk Protection)

- 돼지 가축총수입보험(LGM-Swine): 돼지 시장가격이 하락하거나 사료비가 상승하여 실제총마진이 기대총마진에 못 미치면 양돈생산자는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 돼지 시장가격은 생산자가 시장에서 수취하는 가격을 이용하지 않고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선물가격을 적용함

- 돼지 가축위험보험(LRP-Swine): 가축 시장가격이 하락할 때 양돈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여주는 보험제도로써 양돈농가가 돼지 출하시기에 맞춰서 보험기간*과 보상범위**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

* 보험기간: 보험계약 효력 발생일 전에 태어난 돼지 13, 17, 21, 26, 30주 / 태어나지 않은 돼지 30, 34, 39, 43, 47, 52주 중 선택(출하예정 시기와 가장 가까운 주 선택)

** 보상범위: 예상 출하가격의 70~100% 수준에서 선택

□ 캐나다 농업투자계정

- 개별 농가가 농업소득 감소에 대응하고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농가 적립금에 더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적립하는 제도

- 농가가 평년 소득(판매액 - 비용)의 1%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정부는 그 금액만큼을 별도 펀드로 매칭

* 농가 적립 최대 한도는 평년 소득의 4%(총 4년치)로 제한, 가입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관리 의무 준수 필요

- 필요한 신규 투자, 소득 감소 등에 대응하여 언제든지 인출 가능

□ 일본 가축공제

- 소·말·돼지의 사망폐용, 질병상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보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3)

자. 후계·청년 한돈인 등에 대한 특별지원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후계한돈인과 청년한돈인에게 생활·가축사육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과 축사시설 구입 및 신축·개·보수 자금 지원 시 특례보증 등을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착자금, 컨설팅과 실습·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후계 및 청년 한돈인 육성·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일정소득 이하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이하 “후계한돈인”이라 한다)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청년한돈인”이라 한다)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한돈산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정착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한돈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축산계열학교·축산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한돈산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업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한돈산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임대, 축사시설 구입 및 신축·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 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특례 보증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년 한돈인이 한돈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동 법은 후계농, 청년농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동 법에 따라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정 필요성이 낮음. 따라서,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 기본법이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제정안은 한돈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청년들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족한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청년 한돈인에게 생활·가축사육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돈산업 관련 실습 또는 창업 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한편, 안 제1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및 일정소득 이하의 후계·청년한돈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대규모 한돈농가를 운영하는 후계·청년한돈인에게까지 해당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지원책일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 보임.

그런데, 안 제12조제1항에서 “후계·청년한돈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및 일정소득 이하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³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어업에 종사하거나 한돈 사육 외의 농업에 종사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까지도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12조제1항 중 지원대상 부분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중 한돈을 사육하는 자”로 수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 제정안을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 이미 존재³¹⁾하고 있어 동 법에 따라 이미 청년농업인에 대한 특별지원

30)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1)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이 가능한 상황인 점도 제정안과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법은 후계농, 청년농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제정안과 같이 후계·청년 한돈인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본법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차.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돈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한돈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에 필요한 경영안정 사업 및 한돈가격 및 수급불안 요인 발생 시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안정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관련 시설·기자재 등 관련 시설 설치 사업 2. 스마트 축사 신축·개보수 등 축사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 3. 한돈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에 필요한 경영안정 사업 4. 한돈가격 및 수급불안 요인 발생 시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안정 사업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돈농가의 소득증대와 한돈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경영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 구매자금 지원, 소득세 감면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FTA농어업법」, 「농어민부채경감법」에 따라 이미 축사시설 현대화, ICT 장비 설치, 사료구매자금, 경영개선자금 및 경영회생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제정 필요성이 낮음.

② 대한한돈협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질병 발생, 사료·원자재 가격 급등, 수급 불안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위기상황 시 한돈농가의 도산을 막고, 산업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임.

FTA 피해보전직불제 종료이후, 가격 하락 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돈농가에 대하여 긴급경영안정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에 동의함.

3) 검토의견

최근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 및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한돈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제정안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돈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등에 필요한 경영안정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한돈 생산 기반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어려움에 처한 한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한돈산업의 기반 위축을 방지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긴급 경영안정 사업 등의 지원 대상을 “모든 한돈농가”로 규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한돈농가까지 포함하게 되는바, 지원 대상이 넓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지원 대상을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돈농가”로 명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과 같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한돈농가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한돈농가로 하여금 신청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해당 신청의 처리 절차·내용·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3조제2항의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용 촉진, 투자 활성화, 특정 지역 발전 등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조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인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카. 한돈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한돈 수급조절·가격안정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과 농식품부장관이 소속 관계공무원과 한돈관련 전문가중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돈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함)를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4조(한돈수급조절협의회) ①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한돈의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돈의 수급상황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한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며, 한돈의 수급은 다른 축산물의 수급과 연계되어 있어 현행과 같이 모든 축산물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3) 검토의견

한돈의 수급상황에 따라 한돈 가격의 등락폭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한돈농가의 생존을 위해 적절한 한돈 수급 관리를 통한 한돈 가격안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한돈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한돈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돈산업 관련 정책 결정의 전문성 강화, 한돈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수급조절협의회는 「축산법」 제32조의4³²⁾에 따라 기 운영되고

32) 「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

있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³³⁾와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및 한돈수급조절협의회 비교 】

구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한돈수급조절협의회
법적근거	축산법 제32조의4	어기구의원안 제14조
소 속	농림축산식품부	
성 격	자문	심의·의결
대 상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한돈의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1. 기재부 소속 물가관련 4급이상 공무원 2. 농식품부소속 축산 수급조절 관련 4급이상 공무원 3. 통계청 소속 가축동향조사 관련 4급이상 공무원 4.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물 수급관리 관련 집행간부 5.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장 6. 소비자단체대표 7. 공공기관·학계 축산 관련 전문가 8.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 1. 공정거래위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2. 농식품부장관이 소속 관계공무원과 한돈관련 전문가 중 임명 또는 위촉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현행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라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동 협의회에 돼지(양돈)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또한, 안 제8조의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한돈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위원 구성도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외에 한돈협회대표 등 한돈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개 위원회를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돈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돈수급조절협의회 비교 】

구 분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안 제8조)	한돈수급조절협의회(안 제14조)
목적	한돈산업 발전 및 지원	한돈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기능	심의	심의·의결
중요사항	1. <u>한돈 가격안정·수급 조절</u> 2. 한돈 기술개발·보급 3. 한돈산업 인력육성 4. 사료 품질향상·사료개발·보급 5. 한돈유통 및 수출지원 6. 한돈 소비자보호·소비촉진	1. <u>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제도·운영</u> 2. <u>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u> 3. <u>수급상황분석 및 판단</u> 4. <u>그 밖에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사항</u>
위원구성	1. 농식품부 관련 부서 2. 한돈관련 학계 전문가 3. 대한한돈협회 대표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임원 5. 한돈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 6. 소비자단체 7. 한돈 수출·입 업체 8. 한돈 유통 전문가	1. 공정거래위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2. 농식품부장관이 소속 관계공무원과 한돈관련 전문가 중 임명 또는 위촉
구성방법	농식품부장관이 2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다. 과잉생산 예측 시 한돈 생산 또는 출하 조정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한돈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고, 한돈의 과잉 및 과소 생산이 예측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수급조절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일정지역의 한돈의 생산 또는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5조(한돈 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 및 과소 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또는 일정지역의 한돈의 생산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수급 조절은 한돈뿐만 아니라 한우, 가금 등 다른 축종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현행 「축산법」에 전체 축종의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미 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가 「축산법」에 확립되어 있으므로 「축산법」 개정 시 종합계획에 수급 조절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상품의 생산·출고를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제40조 제1항 제3호) 위반(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법률안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축산계열화법」 제5조에서는 축산물 수급조절시 공정위와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규정³⁴⁾하고 있음.

따라서, 한돈의 수급조절시에도 관련 협의회의 심의 뿐만 아니라 공정위와의 협의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장구조개성정책과>

한돈 가격변동에 따른 한돈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려는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장에 의한 가격·생산량 결정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정부가 기준가격, 적정 생산량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훼손되어 과소·과잉생산이나 무임승차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34) 「축산계열화법」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돼지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국내 육류 소비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품목³⁵⁾이고, 등락폭이 큰 축종³⁶⁾으로, 한돈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시 한돈농가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돈가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특히, 한돈의 경우 채소와 달리 산지폐기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처럼 생산 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대상이 되는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제정안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농식품부장관이 한돈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과잉생산 또는 과소생산과 관련한 ‘한돈수급 분석 및 전망자료’ 등을 한돈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한 한돈농가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5) '24년 기준 육류(소, 돼지, 닭) 1인당 소비량 60.1kg 중 돼지가 30.1kg(49.9%) 차지

36) 도매가격(원/kg) : ('13) 3,375 → ('15) 4,585 → ('17) 4,640 → ('19) 3,779 → ('21) 4,722 → ('22) 5,227 → ('24) 5,239

파. 시장격리 및 비축사업 추진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한돈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국가가 한돈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돈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여 민간이 일정 기간 자기 부담으로 한돈을 비축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6조(시장격리 및 비축사업 등) ① 국가는 한돈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한돈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한돈의 가격이 제1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기간 자기부담으로 한돈을 비축할 시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장격리 및 비축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수급 조절은 한돈뿐만 아니라 한우, 가금 등 다른 축종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현행 「축산법」에 전체 축종의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미 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가 「축산법」에 확립되어 있으므로 「축산법」 개정 시 종합계획에 수급 조절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은 시장 논리에 의거하여 결정되나,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정부가 수급안정 정책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장 개입을 하고 있음.

제정안은 한돈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국가가 직접 한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기간 자기부담으로 한돈을 비축할 시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수급조절을 통해 한돈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가격안정을 통한 한돈 생산기반 유지 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한돈의 보관 가능기간 등을 감안할 때, 구매 및 비축제도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에 효과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돈의 경우 냉장 보관기간이 약 45일이며, 냉동 보관 시에는 당초 (냉장 보관 시) 가격보다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한돈을 구매한 국가나 비

축했던 민간은 45일 안에 다시 한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수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수매 또는 비축 물량이 단기간에 시장에 나오는 경우 당초 기대했던 한돈의 가격안정 효과는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냉동 보관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수급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냉동에 따른 한돈 가치의 감소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수매가격-판매가격)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냉동 보관 가능기간인 최대 2년 이내³⁷⁾에는 모든 물량이 다시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한돈가격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장기화될 우려도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과거 「축산법」 상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수매·비축사업의 근거가 있었으나, 과도한 재정소요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폐지된 사례³⁸⁾가 있었으므로, 이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은 유통업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유통업자는 돼지고기 소비기한을 냉장 약 45~55일, 냉동 2년으로 설정

38) 「축산법」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제35조 (가격안정조치)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부류도매시장 및 축산부류공판장(이하 각각 “都賣市場” 및 “共販場”이라 한다)에서 지정축산물의 가격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상한가격과 안정하한가격의 범위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매·비축·방출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축산법 개정('93.6.11.)에 따라 사업근거가 신설된 후, '99.1.29. 개정 시 폐지).

하. 도축·출하장려금 지급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돈농가가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돈을 도축 또는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7조(도축·출하 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농가가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돈을 도축 또는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대상·요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수급 조절은 한돈뿐만 아니라 한우, 가금 등 다른 축종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현행 「축산법」에 전체 축종의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검토의견

제정안은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한돈농가가 한돈의 출하 시기나 도축물량 등을 조절하도록 하여 적정한 한돈수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축산법」 제3조 및 제47조³⁹⁾에 근거한 최근 10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축·출하장려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성수기 가격안정을 위해 한우, 돼지에 도축수수료 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음.

【 최근 10년간 도축·출하장려금 집행 현황 】

연도	축종	구분	개요	집행액 (백만원)
‘22	한우	추석 도축수수료	■(목적) 추석 성수품 물가 및 한우 수급안정 ■(근거) 축산법 제3조 ■(사업) 축산물수급관리 ■(대상) 추석 성수기에 도축한 한우 암소 ■(지원) 도축수수료 10만원/마리 지원	2,261
	돼지	설 도축·상장 수수료	■(목적) 설 성수품 공급 및 물가 안정 ■(근거) 축산법 제3조 ■(사업) 축산물수급관리 ■(대상) 설 성수기 때 공판장에 상장한 돼지 ■(지원) 도축·상장 수수료(실비, 2만원/마리 한도)	12,030
		휴가철 도축·상장 수수료	■(목적) 하계 성수기 돼지 공급 및 물가 안정 ■(근거) 축산법 제3조 ■(사업) 축산물수급관리 ■(대상) 하계 성수기 때 공판장에 상장한 돼지 ■(지원) 도축·상장 수수료(실비, 2만원/마리 한도)	

39)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연도	축종	구분	개요	집행액 (백만원)
		추석 도축수수료	■(목적)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근거) 축산법 제3조 ■(사업) 축산물수급관리 ■(대상) 추석 성수기에 도축한 돼지 ■(지원) 도축 수수료 1만원/마리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6.18.)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우수품질의 한우 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질 등급별 출하장려금(한우 1두당 8~3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한우 출하장려금 지급사례 】

(단위: 천원/두)

지자체	사업명	지원대상	지급조건 (등급판정 등)		출하장려금 지급 단가
충북	청품명월한우 브랜드출하 장려금	충북한우광역브랜드 청품명월 참여농가	혈통등록우		200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충남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 참여농가	토바우	1++	200
				1+	120
				1	80
경북	광역한우브랜드 활성화	경북한우광역브랜드 참품한우 참여농가	수도권 출하 (경기, 충남, 충북)		80
경남	고급육 출하농가 장 려금 지원	경남한우공동브랜드 한우지에 출하농가	한우지에	1++	300
				1+	200
제주	고품질 축산물 우수 등급 장려금 지원	서귀포시 한우 출하농가	서귀포 출하	1++	40
				1+	20
강원 원주	고급육 출하 장려금	원주한우브랜드 치악산 참여 농가	치악산	1++	1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2201921) 비용추계서」, 2024.8.29.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지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축·출하장려금의 지원 규모를 통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한도 수급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거.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9조(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쟁이나 자연 재해 등에 따른 급격한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고, 기금의 재원 및 분담 비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생산자 단체,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용도 또는 지원기준,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사료는 모든 축종이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금이 필요하다면 사료와 관련된 모든 주체와 논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 한 후 「축산법」 또는 「사료관리법」 등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⁴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 간 불일치, 기금 고갈 우려,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보다 사료구매자금이 축산농가의 지원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되어 '13년부터 축산농가에 대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중임.

② 대한한돈협회

한돈은 산업적 및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하나, 시장개방, 환경, 방역, 동물복지 등 다양한 위협 요소가 존재하고, 배합사료의 경우 외부 변수에 따른 가격 급등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자급률 또한 현재 20%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함.

40)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12.11, KREI)

3) 검토의견

사료가격안정기금은 국제곡물가격 급등시 곡물가격 인상분 또는 배합 사료가격 인상분의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이와 같이 운용되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우리나라와 축산업의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 1964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 일본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는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이 축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 사료업체, 축산농가 3자가 적립금을 부담, 배합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이를 보전
- 보전방법은 통상보전과 이상보전 2단계로, 발동조건을 만족하면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
 - 통상보전기금 : 축산농가, 사료업체가 적립금을 적립
 - 이상보전기금 : 정부와 사료업체가 적립, 수입원료가격 15% 이상 폭등시 지원

구 분	평상시	급등시
일 본	▶ 통상보전 기금 운용 - (재원) 농가 400엔/톤, 사료회사 800엔/톤 - (발동) 수입원료가격 직전 1년 평균 상회 시 차액지급 (재원고갈로 차입 중)	▶ 이상보전 기금 운용 - (재원) 정부 50%, 사료회사 50% - (발동) 수입원료가격 직전 1년 평균 115% 초과 - 통상보전 기금에 이상보전 기금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료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5년도에 도입되었으나, 동 제도는 거출금 부담(당시 수입업자에게만 부과)에 비해 추진효과가 미흡하여 1984년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자연재해 및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으로 사료의 원료가 되는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축산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음.⁴¹⁾

특히, 우리나라의 축산농가들은 대부분의 사료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국내 축산업은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취약한 특성이 있고, 사료가격은 농가의 전체 생산비의 생산비의 약 60~70%를 차지함에 따라, 사료가격 급등시 농가의 경영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1) 대한한돈협회 등

【 연간 사료 가격 】

(단위 : 원/kg)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08	427.0	438.0	454.0	477.0	506.0	506.0	535.0	550.0	571.0	579.0	594.0	608.0	520.4
`09	630.0	625.0	624.0	611.0	588.0	574.0	578.0	574.0	553.0	543.0	538.0	545.0	581.9
`10	541.2	543.7	543.8	534.3	531.0	533.0	543.0	547.0	553.0	541.0	537.0	541.0	540.7
`11	563.7	524.4	580.4	595.8	605.8	613.0	627.8	628.8	624.3	625.9	641.1	634.4	605.4
`12	633.7	644.9	656.8	639.9	635.6	644.2	642.4	651.9	658.5	646.7	639.1	638.4	644.3
`13	643.0	640.6	631.9	631.2	639.0	644.0	649.1	651.9	641.9	634.6	624.5	616.1	637.3
`14	606.9	608.6	604.9	602.9	607.9	610.0	616.7	613.6	614.0	615.1	603.1	613.8	609.8
`15	606.3	610.8	610.4	597.9	596.4	596.6	600.4	574.1	579.7	570.5	560.0	559.7	588.6
`16	565.4	560.4	556.9	558.7	563.1	557.9	563.9	564.2	558.9	550.7	554.4	552.5	558.9
`17	550.7	548.1	549.4	551.4	551.2	550.5	553.5	553.4	553.9	544.4	543.0	543.7	549.4
`18	537.0	541.2	540.3	539.5	544.7	546.6	556.2	564.6	564.4	562.7	562.2	565.6	552.1
`19	559.0	554.0	562.5	562.7	567.2	569.5	572.3	567.1	560.6	557.7	554.9	552.3	561.6
`20	567.9	568.9	563.8	571.8	579.0	575.9	587.8	575.5	577.6	567.5	559.1	560.8	571.3
`21	565.6	568.7	580.6	613.1	615.1	607.7	594.4	633.1	646.0	650.2	663.6	655.5	616.1
`22	670.7	673.5	696.0	708.9	720.4	742.6	780.8	810.5	810.7	803.2	802.5	799.2	751.6
`23	790.2	787.5	784.5	785.5	785.9	792.2	794.4	787.9	775.4	762.0	753.9	741.7	778.4
`24	733.5	727.2	729.6	733.2	732.2	731.6	734.1	739.8	719.9	720.6	718.5	718.4	728.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3)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특정자금으로, 안 제 19조와 같이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설치를 규정한 법률 제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금은 개별 기금별로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서 그 재원의 조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⁴²⁾, 제정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보조 또는 출연금만 명시하고 있을 뿐 축산농가, 사료회사 부담금 등 별도의 재원이 부재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³⁾

셋째, 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그 용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금의 필요성, 운용방향, 기금 재원 납부 주체, 용도,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한돈농가를 비롯한 기금 관련 이해관계자별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2) (법제이론과 실제, p. 483) 통상적인 기금의 재원으로는 ①정부의 출연금·융자금 ② 개인·단체의 임의·강제 출연금 ③ 부담금 ④ 기금의 차입금,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 ⑤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 ⑥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출연금·차입금 ⑦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 있다.

43)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경우에도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이 축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 사료업체, 축산농가 3자가 적립금을 부담

너. 한돈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돈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한돈 유통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1조(한돈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한돈 개량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한돈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돈 품질고급화 추진 및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3. 한돈 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다른 법률에서 축산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기규정하고 있으며, 한돈 품질고급화는 개념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자급률 제고와 역행할 수 있어 정부 정책방향과 불합치함.

또한, 축산물의 규격 및 품질표시 기준 등 축산물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식약처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한돈 관련 필요 사항이 있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품질고급화와 생산량 증가라는 목표는 일반적으로 양립이 어려우므로 자급률 향상 등 농정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바,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제정안은 최근 사료값 폭등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돈농가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한돈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돈 품질고급화 추진 및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은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조문임에도 한돈 품질고급화라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논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축산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등에 따라 축산물의 품질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과 관련하여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더. 한돈 소비촉진 지원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의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등의 시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3조(한돈 소비촉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한돈 소비촉진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확대는 한돈뿐 아니라 모든 국내산 축산물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로 「축산법」 또는 「축산자조금법」에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정부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매칭을 통해 소비촉진을 기지원 중이며, 지원 강화 필요시 「축산자조금법」을 통해 한돈의 판매 확대 및 소비 촉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함.

3) 검토의견

학교, 군부대 등에서의 단체급식은 대량의 식재료 소비를 유발하므로, 이를 통한 축산물 소비 촉진 효과가 큼.

2018년 기준 국내 단체급식 시장규모는 14조원으로 공공급식이 7조 1,000억원, 민간급식이 6조 9,000억원을 차지하였음.⁴⁴⁾

【 단체급식 규모(2018년 기준) 】

구 분		규 모
공공급식	학교	3조 2,000억원
	군대	1조 2,000억원
	복지시설	9,800억원
	유치원·어린이집	7,500억원
	국공립병원	1,500억원
	공공기관	800억원
	기타	7,400억원
	소 계	7조 1,000억원
민간급식		6조 9,000억원

※자료: 농민신문(2022. 8. 24.)

이에 제정안은 공공급식의 확대 등의 시책을 통해 학교 등 대량 소비처에 한돈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하여 한돈소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4) 농민신문, [관 커지는 급식시장] 시장규모 14조 ‘홀쩍’ 국내 농업계 발빠른 선점 필요, 2022.8.24.

첫째,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식단 운영의 탄력성 저해 및 자율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

현재 학교급식 관계법령에서는 다양한 식품 구성의 원칙과 영양관리기준만을 규정하고, 학생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⁵⁾

이에 학교급식의 구체적 영양기준, 식재료의 원산지 등의 사항은 학교별 급식예산 등을 고려하여 각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임.⁴⁶⁾

따라서, 제정안의 공공급식 확대 시책 설정은 학교식단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학교의 자율권 및 학부모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한돈에 대해서만 공공급식을 확대하려는 시책은 다른 축산농가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45)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6)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축산물 생산액 기준으로, 한돈이 모든 축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그 밖의 다른 축종에 우선하여 공급식을 확대하려는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년 기준 축산물 생산액】

구 분	생산액(단위 : 10억원)	비중(단위 : %)
한돈	9,112.7	49.2
한우	4,428.7	23.9
닭	2,713.1	14.7
오리	1,714.0	9.3
육우	270.4	1.5
염소	187.7	1.0
젖소	66.9	0.4
사슴	15.0	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3)

셋째, 현행 「축산자조금법」 제4조에 따라, 축산자조금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등에 사용⁴⁷⁾되고 있고, 축산물의 소비확대는 한돈 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산 축산물에 중요한 문제인 점을 고려할 때, 한돈을 포함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축산법」 또는 「축산자조금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7)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러. 한돈 해외시장 개척 지원

1) 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돈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정보 인력 교류, 대외 홍보,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6조(국제협력의 촉진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정보·인력 교류, 대외 홍보, 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국제협력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식품기본법」 등에 이미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품목별로 수출 업무를 규정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중복이 발생하므로 축산물 수출 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축산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검토의견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철폐(미국, EU 등)에 따라 완전 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가격의 등락폭이 큰 상황으로, 한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판로를 보다 확대·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⁴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⁴⁹⁾에서 우리나라 식품과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진흥을 규정함에 따라, 한돈산업도 이미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8)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 2의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 2의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1

국내 양돈 산업 통계

연 도		단위	'0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생 산 액		억원	37586	45446	53482	50095	66151	69671	67565	73380	71185	63924	72193	84785	96496	91127	-
생 산	사육두수	천두	8,961	8,171	9,916	9,912	10090	10187	10367	11273	11333	11280	11078	11217	11,124	11,089	10846
	모돈수	천두	965	903	962	895	937	958	974	1,058	1,063	1,026	1,001	1,023	995	993	974
	사육농가수	천호	12.3	6.3	6.0	5.6	5.2	4.9	4.6	3.9	3.6	3.2	3.0	3.2	3.0	3.0	2.8
	사육농장수	천호	-	-	-	-	-	6.9	6.7	6.3	6.2	6.1	6.1	5.9	5.7	5.6	5.5
	농장당사육두수 (‘16년까지 농가당 사육두수)	두	729	1,287	1,642	1,759	1,949	2,075	2,266	1,786	1,831	1,839	1,816	1,888	1,953	1,968	1,957
	공 급	도축마리수 (등급판정 기준)	천두	13433	10819	14018	16108	15662	15884	16524	16713	17350	17812	18307	18366	18544	18754
	출하체중	kg	110	114	115	114	114	114	114	115	116	117	116	116	116	116	116
	생산량(A)	천톤	676.6	647.1	837.6	953.6	931.5	945.5	986.4	997.8	10358	10666	10978	10974	11074	11182	11319
	수입량(B)	천톤	161.9	370.2	276.1	185.0	273.9	357.9	318.5	369.2	463.5	421.3	310.5	332.8	442.4	402.9	452.5
소 비	소비량(A+B)	천톤	838.5	945.7	10258	10388	11041	11999	12096	12629	13992	13902	14075	14305	15498	1521	1584
	1인당 소비량	kg	17.8	18.8	19.2	20.9	21.8	22.8	24.1	24.5	27.0	26.8	27.1	27.6	30.1	29.6	30.9
	자급률	%	80.7	60.9	73.1	82.2	75.2	70.2	73.7	70.8	66.9	69.7	77.9	76.7	71.5	73.5	71.4
	수출량	천톤	0.08	0.5	0.3	1.9	1.9	2.2	2.1	1.5	0.9	1.3	4.4	7.7	7.1	8.5	10.4
가 격 및 수 익	탕박가격(kg) (제주 제외)	원	3,391	5,680	3,717	3,375	4,542	4,585	4,303	4,640	4,296	3,779	4,185	4,722	5,227	5,134	5,239
	생산비(100kg)	천원	174	302	294	290	276	270	267	284	284	284	276	298	346	370	366
	생산비 (자육 kg)	원	2,271	3,937	3,833	3,781	3,598	3,514	3,478	3,698	3,708	3,698	3,603	3,888	4,511	4,754	4,697
	경영비(100kg)	천원	163	283	278	269	265	258	255	272	272	270	263	285	329	348	338
	소득(마리)	천원	95	165	26	-4	97	111	94	99	63	22	63	83	75	48	64
	순수익(마리)	천원	82	143	9	-28	84	97	82	86	48	6	47	68	57	23	32

* 통계 출처: (생산) 통계청 가축동향조사(4/4분기), (공급) 축평원, 검역본부, 식약처 (소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 및 수익) 축평원, 통계청

** 사육농가수의 경우 '16년까지는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기준, '17년부터는 농림어업조사 기준, 사육농장수의 경우는 돼지이력제 자료('14.12월 시작) 기반

참고 2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현황

(단위 : 천톤, %)

국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B)	'24년 (A)	증감 율 (B/A)
총 수입량	318.5	369.2	463.5	421.3	310.5	332.8	442.4	402.9	452.5	12.3
미국	106.1 (33.3)	135.0 (36.6)	184.6 (39.8)	173.8 (41.3)	128.7 (41.4)	121.1 (36.4)	125.3 (28.3)	143.5 (35.6)	176.7 (39.1)	23.2
EU	166.6 (52.3)	186.6 (50.5)	219.4 (47.2)	186.5 (44.3)	129.0 (41.6)	156.3 (47.0)	238.1 (53.8)	152.3 (37.8)	154.1 (38.2)	1.2
독일	59.3 (18.6)	80.2 (21.7)	83.9 (18.1)	78.0 (18.5)	52.4 (16.9)	-	-	1.1 (0.3)	29.7 (6.6)	2,684.8
스페인	41.7 (13.1)	35.1 (9.5)	56.0 (12.1)	56.7 (13.5)	35.2 (11.3)	67.0 (20.1)	122.8 (27.8)	79.6 (19.8)	63.2 (14.0)	-20.6
네덜란드	14.4 (4.5)	22.6 (6.1)	24.7 (5.3)	19.9 (4.7)	13.3 (4.3)	29.6 (8.9)	48.1 (10.9)	26.1 (6.5)	29.3 (6.5)	12.2
오스트리아	13.4 (4.2)	13.9 (3.8)	14.0 (3.0)	10.7 (2.5)	10.2 (3.3)	23.8 (7.2)	22.7 (5.1)	18.1 (4.5)	13.1 (2.9)	-27.4
덴마크	7.5 (2.4)	8.9 (2.4)	11.1 (2.4)	8.0 (1.9)	8.2 (2.6)	16.8 (5.0)	14.6 (3.3)	7.8 (1.9)	3.7 (0.8)	-52.0
벨기에	10.7 (3.4)	9.3 (2.5)	10.0 (2.2)	-	-	0.5 (0.2)	6.4 (1.4)	7.6 (1.9)	7.0 (1.5)	-7.9
프랑스	7.1 (2.2)	7.4 (2.0)	7.9 (1.7)	5.3 (1.3)	3.7 (1.2)	8.8 (2.6)	9.1 (2.1)	7.8 (1.9)	6.4 (1.4)	-18.8
아일랜드	4.9 (1.5)	2.4 (0.7)	4.7 (1.0)	3.6 (0.9)	2.0 (0.6)	5.2 (1.6)	9.0 (2.0)	4.2 (1.0)	1.6 (0.4)	-61.2
칠레	22.2 (7.0)	21.8 (5.9)	26.0 (5.6)	24.9 (5.9)	22.7 (7.3)	23.2 (7.0)	28.4 (6.4)	29.7 (7.4)	36.0 (8.0)	21.3
캐나다	13.1 (4.1)	14.7 (4.0)	22.5 (4.9)	25.3 (6.0)	21.7 (7.0)	21.9 (6.6)	36.4 (8.2)	52.2 (13.0)	53.2 (11.8)	2.0
멕시코	9.9 (3.1)	11.0 (3.0)	10.9 (2.4)	8.4 (2.0)	4.9 (1.6)	6.5 (1.9)	6.4 (1.4)	9.4 (2.3)	6.3 (1.4)	-33.4
브라질	-	-	0.1 (-)	2.5 (0.6)	3.4 (1.1)	3.4 (1.0)	7.5 (1.7)	10.6 (2.6)	21.2 (4.7)	100.2

* 냉장/냉동 수입비중('24) : 452.5천톤/(냉장) 36.3천톤(8.0%), (냉동) 416.2천톤(92.0)

참고 3

한돈(축산) 농가 관련 지원 사업 현황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본예산(억원)					법적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21	'22	'23	'24	'25			
경영 개선	피해보전직불	200	200	180	54	219	자유무역협정(FTA) 제6조	피해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	FTA로 피해를 본 농가 피해 보전(최대 35백만원)
	농업자금이자보전 (농축산경영자금)	225	226	201	225	212	축산법 제47조 (기금의 용도)	소규모 축산 농가(한우 50마리 미만), 경종 농가 등	경영비 일부를 저리로 지원 (최대 10백만원)
	농업자금이자보전 (농업경영회생자금)	14	13	18	18	25	농어민부채경감법 제5조의2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경영위기에 처한 농·축산업·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및 연체 채무
	농업자금이자보전 (긴급경영안정자금)	8	7	7	7	7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영업을 중단한 농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반운영자금
탄소 저감	저탄소농림축산 식품기반구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12	13	16	26	36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494	426	377	361	384	가축분뇨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축산농가, 농업법인, 농·축협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용자)	609	499	391	329	339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축산농가 대상 용자	
수급 조절	축산자조금 (한돈자조금)	58	54	54	54	54	축산자조금법 제3조 (한돈자조금의 지원)	한돈	농가 자율적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거출금에 보조금을 매칭하여 지원
	농업관측	171	167	169	170	18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농림업관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	농업관측을 위한 운영비 및 운영비 지원
교육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축산관련종사자교육)	41	32	32	32	27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는 자 등	교육비용 지원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본예산(억원)					법적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21	'22	'23	'24	'25			
한돈농가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개선 등)	1,912	1,688	1,485	1,396	1,335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5조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중소규모 농 업인 등, 가축사육농가, 축산농가	축사 신축·개보 수, 시설·장비 비용, 방역시설, ICT 장비 등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3,362	3,596	4,018	3,484	3,444	농어촌복지법 제27조, 제33조/ 농어업인복지법 제13조, 제43조	주소지가 농 촌 및 준농 촌 지역에 해당하면 서 농업·축산·임 업에 종사하 는 자	건 강 보 험 료 와 연 금 보 험 료 의 일부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568	577	621	628	628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만 15~87세 농업인	보험료 일부 지 원
	가축위생방역지원	607	624	638	648	6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지자체, 농축협	방역본부 및 공동방재단 운영지원
	가축방역지원 (방역대응, 사체처리, 예방약 등)	1,885	2,249	2,094	2,459	2,5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제3조, 제13조	지자체, 대한수의사회, 농협, 지자체, 검역본부 등	긴급방역비, 예방약품, 소독지원 등 지원,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장비, 구역 방역·가축방역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
품질· 유통	가축개량지원 (국가지역 종축개량지원 / 한우젓소)	449	456	461	464	471	축산법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농협·가축개량원 등 시도, 지역축협	보증씨수소 선발, 정액보급 등, 지역 단위 우수 유전자 원 확보·보급 등
	축산물품질관리	506	585	605	655	615	축산물 이력법 제12조(비용의 지원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자체 등	축산물이력제, 등급판정 등
	축산물위생안전 검사운영	203	207	209	201	2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 금)	가축위생방역본부 농협, 지자체 등	도축검사원 및 축 산물 위생중앙감 시반 운영
	공익기능증진직불 (친환경축산직불)	16	16	16	16	41	농업농촌공익 직불법 제22조(산악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HACCP인증을 받은 자 중 친 환경축산물 인 증유가를 받은 농업인	직접지불금 지 급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운영)	57	51	46	46	45	농수산물품질법 제110조(자금지원)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 등	GAP 인증을 위한 안전성분석 및 GAP 위생시설 보 완 지원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우수브랜드 육성(23년 종료)	28	15	15	13	11	축산법 제47조 (기금의 용도)	도매시장 브랜드	우수 브랜드 인증· 지원, 온라인으로 경매 가 능한 시스템 구 축·운영
	농산물원산지관리 (원산지 및 이력관리)	168	178	179	181	171	원산지표시법 제3조 (원산지 표시), 축산물품질관리법	직접집행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비 용 지원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본예산(억원)					법적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21	'22	'23	'24	'25			
수출 기반조성	동축산물검역검사	137	138	128	149	17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직접집행 (검역본부)	수출 희망품목 수 요조사 실시, 해 외수출작업장 점 검 및 수출 협상 등
	농식품해외시장진출 농식품시장개척 농식품글로벌마케팅지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421	1,449	1,472	1,593	1,587	농업식품기본법 제59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농식품 수출 농가 및 기업	해외 시장정보 조사, 해외식품인증지원 센터 및 온라인 마케팅, 수출농가 안정성 검사 수입국 검역관 현지조사지원 등

참고 4

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개요

□ 사료원가절감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3733-334)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 (B)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사료산업 종합지원	63,268	89,600	89,600	101,200	11,600	12.9

* 실적행 : ('21) 34,781(68.7), ('22) 62,827(97.0), ('23) 63,268(97.7), ('24) 88,980(99.3)

○ (사업내용) 대상 사료제조업체 지원 원료구매·시설개보수 자금 저리 융자, 대상 수입사료신고단체 지원 검정(국가사무 위탁) 장비 교체 비용 지원

○ (세부내용) ('24) 89,600백만원 → ('25) 101,200 * 융자

- 내역① 원료구매자금 : ('24) 89,000백만원 → ('25) 100,000(31개소)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2.5 ~ 3%, 2년거치 일시상환 / 사료업체·사료단체

** 내용 : 사료제조업체의 사료원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원료 구매비 융자 지원

- 내역② 개보수자금 : ('24) 600백만원 → ('25) 500(1개소) * 융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2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료업체

** 내용 : 안정적 사료 공급,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사료제조업체 노후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 지원

- 내역③ 사료검정장비지원 : ('25 신규) 700(2개소, 사협, 단협)

* 지원조건 : 국비 50%, 자부담 50% / 수입사료 신고단체(사협, 단협, 농협사료)

** 사료검정 위탁 수행 수입사료신고단체의 노후(내용연수 경과) 사료 검정장비 교체 비용 지원

□ 축산농가 경영안정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3733-329)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 (B)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310,458	300,000	300,000	300,000	-	-

* 실적행 : ('21) 248,961(72.2), ('22) 321,945(90.7) ('23) 310,458(87.5) ('24) 258,473(86.2)

○ (사업내용) 대상 축산농가·법인 등에게 지원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 선납입금 상환 자금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융자 지원

○ (세부내용) ('24) 300,000백만원 → ('25) 300,000 * 융자

- 농가사료구매자금 : ('24) 300,000백만원 → ('25) 300,000(3,600농가)

* 이차보전 사료구매자금 융자규모 7,000억원('25: 31,335백만원) 합산 시 총 1조원 규모

** '25년 추정 평잔 1,368,361백만원 × 이차율(2.29%) * 기준금리 4.0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제출(2025. 6. 13)

문 의 처

02)6788-5426
